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 방 · 군 사 시 설 사 업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신원식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1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벌점 부과 대상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범위와 벌점의 점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 생략 대상 소규모 사업의 범위(안 제4조제2항 신설)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
략하도록 함.

나.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 제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 1)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를 국방·군사
시설사업 계약이나 국방·군사시설사업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한 자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
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로 정함.
- 2)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등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자에게 통지한 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유별로 부
과되는 형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 3)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
년 사이의 범위에서 정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4)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군사기
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
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

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26. ~ 5. 7., 5.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을 “건축·축조·대수선·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별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 계약이나 국방·군사시설사업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

②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멸한 벌점을 뺀 점수(이하 “누산벌점”이라 한다)가 5점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제4항을 적용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지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 또는 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⑩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⑪ 사업시행자는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상호·대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별점을 부과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의3(중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4(중전의 제8조의3) 전단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14조의3제2항제1호”로 한다.

①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점 부과기준(제8조의2제3항 관련)

1. 별점의 가중기준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별점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별점을 부과한다.

나.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또는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별점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별점을 부과한다.

2. 별점의 소멸기준

가. 부과된 별점은 부과된 날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나.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별점이 부과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된 별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별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한다.

3. 별점의 부과기준

별점 부과 사유	별점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점
나.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15점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	10점
라.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2점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마.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5점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점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20점
아.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7점
자.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과실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2점
차.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점
카.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점
타.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2점
파.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경우	2점
하.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치거나 군사기밀을 손괴·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15점

[별표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8조의2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해당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최종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국방부장관은 별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누산별점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누산별점	제한기간
5점 이상 10점 미만	6개월
10점 이상 15점 미만	1년
15점 이상 20점 미만	1년 6개월
20점 이상	2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① (생략) <u><신설></u>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u>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5조(국방·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u>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u>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국방·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① ----- ----- <u>건축·축조·대수선·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법 제14조의2제1
항 본문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방·군사시설사
업에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
의 자(이하 “국방·군사시설사
업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 계약이
나 국방·군사시설사업 계약
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자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
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
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

②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별
점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
여자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의 그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
설사업 참여자 또는 국방·군사
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
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
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별표 1의 기준
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참
여자에게 별점을 부과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
설사업 참여자에게 부과된 별점
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멸한 별
점을 뺀 점수(이하 “누산별점”
이라 한다)가 5점 이상에 도달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제4항을 적용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지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 또는 임원이 입

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⑩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⑪ 사업시행자는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상호·대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별점을 부과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

제8조의3(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법 제14조

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 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의3(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신설>

의3제1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4(공고의 방법 및 절차) -

----- 법 제14조의3제1

항-----

제9조(권한의 위임) -----

1.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첨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신 설></u> 국방부장관은 <u>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u>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사유지에 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원(權原)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참여자에 대한 사전 통지</u>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u>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별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② ----- <u>법 제14조의3제2항제1호</u>-----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시설기획과	
연 락 처	(02) 748 - 5641